

#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

(의안번호 제668호)

## 예비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16  
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8  
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2. 22  
 라.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6

고 성 군 수

총무위원회 상정

총무위원회 원안가결

### 2.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#### ○ 예산안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2000. 예산안	기정예산안	금회추경안	%
합 계	128,879,278	124,187,000	4,692,278	3.8
일 반 회 계	119,523,049	114,577,745	4,945,304	4.3
특 별 회 계	9,356,229	9,609,255	△253,026	△2.6
상 수 도 사 업	2,641,960	2,641,960	0	0.0
주 택 사 업	23,848	23,848	0	0.0
의료보호기금 운영	3,197,190	3,615,000	△417,810	△11.6
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06,785	628,790	77,995	12.4
농공단지조성사업	868,143	782,486	85,657	10.9
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	1,118,303	1,117,171	1,132	0.1
중소기업육성기금 운 용	800,000	800,000	0	0.0

### 3.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

#### ○ 세 입

( 단위 : 천원 )

구 분	2000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금회추경안	
합 계	119,523,049	100.0	114,577,745	100.0	4,945,304	
세	지방세	10,157,000	8.5	9,855,000	8.6	302,000
	세외수입	10,851,614	9.1	11,992,663	10.5	△1,141,049
	경상적세외수입	4,042,228	(3.4)	3,949,700	(3.4)	92,528
	임시적세외수입	6,809,386	(5.7)	8,042,963	(7.1)	△1,233,577
입	지방교부금	39,029,000	32.7	38,370,000	33.5	659,000
	지방양여금	11,225,466	9.4	11,225,466	9.8	0
	조정교부금	1,910,000	1.6	1,910,000	1.7	0
	보조금	42,328,969	35.4	37,203,616	32.5	5,125,353
	국고보조금	27,533,463	(23.0)	22,643,469	(19.8)	4,889,994
	도비보조금	14,795,506	(12.4)	14,560,147	(12.7)	235,359
	지방채	4,021,000	3.4	4,021,000	3.5	0

#### ○ 세 출

( 단위 : 천원 )

구 분	2000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금회추경안	
합 계	119,523,049	100.0	114,577,745	100.0	4,945,304	
세	경상예산	27,386,251	22.9	28,829,485	25.2	△1,443,234
	인건비	13,079,978	(10.9)	13,876,879	(12.1)	△796,901
	경상적경비	14,306,273	(12.0)	14,952,606	(13.1)	△646,333
	사업예산	86,838,809	72.7	80,392,149	70.2	6,446,660
	보조사업	72,841,632	(60.9)	66,577,771	(58.1)	6,263,861
출	자채사업	13,997,177	(11.8)	13,814,378	(12.1)	182,799
	채무상환	2,068,680	1.7	2,068,680	1.8	0
	지방채상환	2,068,680	(1.7)	2,068,680	(1.8)	0
	예비비등	3,229,309	2.7	3,287,431	2.9	△58,122
	예비비	1,637,969	(1.4)	1,692,999	(1.5)	△55,030
기타	1,591,340	(1.3)	1,594,432	(1.4)	△3,092	

#### 4.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

##### ○ 세 입

( 단위 : 천원 )

구 분	2000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금회추경안	
합 계	9,356,229	100.0	9,609,255	100.0	△253,026	
세 입	지 방 세	0	0.0	0	0.0	0
	세 외 수입	5,817,039	62.2	5,654,255	58.8	162,784
	경상적세외수입	1,762,252	(18.8)	1,773,870	(18.4)	△11,618
	임시적세외수입	4,054,787	(43.4)	3,880,385	(40.4)	174,402
	지 방 교 부 세	0	0.0	0	0.0	0
	지 방 양 여 금	0	0.0	0	0.0	0
	조 정 교 부 금	0	0.0	0	0.0	0
	보 조 금	3,192,190	34.1	3,608,000	37.5	△415,810
	국고보조금	2,539,621	(27.1)	2,882,400	(30.0)	△342,779
	도비보조금	652,569	(7.0)	725,600	(7.5)	△73,031
	지 방 채	347,000	3.7	347,000	3.6	0

##### ○ 세 출

( 단위 : 천원 )

구 분	2000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금회추경안	
합 계	9,356,229	100.0	9,609,255	100.0	△253,026	
세 출	경 상 예 산	1,114,368	11.9	1,124,018	11.7	△9,650
	인 건 비	95,674	(1.0)	95,674	(1.0)	0
	경상적경비	1,018,694	(10.9)	1,028,344	(10.7)	△9,650
	사 업 예 산	6,898,357	73.7	7,235,275	75.3	△336,918
	보조사업	3,192,190	(34.1)	3,608,000	(37.5)	△415,810
	자체사업	3,706,167	(39.6)	3,627,275	(37.8)	78,892
	채 무 상 환	1,177,024	12.6	1,023,024	10.6	154,000
	지방채상환	1,177,024	(12.6)	1,023,024	(10.6)	154,000
	예 비 비 등	166,480	1.8	226,938	2.4	△60,458
	기 타	9,192	(0.1)	11,192	(0.2)	△2,000

5. 계속비 사업조서 : 2000. 당초예산과 같음

6. 채무부담 행위조서 : 해당없음

7. 명시이월 사업조서 : 예산서 참조

8. 2000. 보조(국고, 도비, 양여금)사업 증감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	계	국고보조	도비보조	도분양여금	군분양여금
경정예산안	계	76,345,608	44,912,472	12,259,369	5,594,565	13,579,202
	국비	38,758,929	27,533,463	0	0	11,225,466
	도비 (양여금)	14,794,929	5,134,893	5,740,161	3,919,875	0
	군비	22,791,750	12,244,116	6,519,208	1,674,690	2,353,736
기정예산안	계	70,137,752	37,937,721	13,026,264	5,594,565	13,579,202
	국비	33,868,935	22,643,469	0	0	11,225,466
	도비 (양여금)	14,560,147	4,316,151	6,324,121	3,919,875	0
	군비	21,708,670	10,978,101	6,702,143	1,674,690	2,353,736
증감	계	6,207,856	6,974,751	△766,895	0	0
	국비	4,889,994	4,889,994	0	0	0
	도비 (양여금)	234,782	818,742	△583,960	0	0
	군비	1,083,080	1,266,015	△182,935	0	0

## 9.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·세출예산안 총괄

### 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부서별	계			일반회계			특별회계		
	2000.예산안	기정예산액	금회추경안	2000.예산안	기정예산액	금회추경안	2000.예산안	기정예산액	금회추경안
합계	81,062,187	81,641,334	△579,147	76,039,909	76,280,373	△240,464	5,022,278	5,360,961	△338,683
기획감사실	44,137,974	43,475,642	662,332	43,019,671	42,358,471	661,200	1,118,303	1,117,171	1,132
자치행정과	111,488	112,058	△570	111,488	112,058	△570	0	0	0
종합민원실	572,560	552,843	19,717	572,560	552,843	19,717	0	0	0
문화관광과	5,235,692	5,199,419	36,273	5,235,692	5,199,419	36,273	0	0	0
재무과	19,082,000	19,756,706	△674,706	19,082,000	19,756,706	△674,706	0	0	0
사회복지과	10,868,823	11,414,482	△545,659	6,964,848	7,170,692	△205,844	3,903,975	4,243,790	△339,815
보건소	792,140	840,184	△48,044	792,140	840,184	△48,044	0	0	0
당항포 관리사무소	261,510	290,000	△28,490	261,510	290,000	△28,490	0	0	0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계			일 반 회 계			특 별 회 계		
	2000.예산안	기정예산액	금회추경안	2000.예산안	기정예산액	금회추경안	2000.예산안	기정예산액	금회추경안
합 계	53,051,945	54,505,106	△1,453,161	48,029,667	49,144,145	△1,114,478	5,022,278	5,360,961	△338,683
기획감사실	15,020,244	15,883,548	△863,304	13,901,941	14,766,377	△864,436	1,118,303	1,117,171	1,132
자치행정과	6,095,340	5,947,803	147,537	6,095,340	5,947,803	147,537	0	0	0
종합민원실	509,788	511,588	△1,800	509,788	511,588	△1,800	0	0	0
문화관광과	9,982,556	10,013,450	△30,894	9,982,556	10,013,450	△30,894	0	0	0
재 무 과	845,993	907,993	△62,000	845,993	907,993	△62,000	0	0	0
사회복지과	14,384,200	14,824,467	△440,267	10,480,225	10,580,677	△100,452	3,903,975	4,243,790	△339,815
보 건 소	3,124,824	3,326,821	△201,997	3,124,824	3,326,821	△201,997	0	0	0
당 항 포 관리사무소	265,456	242,456	23,000	265,456	242,456	23,000	0	0	0
읍면 예산	2,823,544	2,846,980	△23,436	2,823,544	2,846,980	△23,436			

## 10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.8% 증가한 1,288억7,927만8천원이며,
-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.3% 증가한 1,195억2,304만9천원이며,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.6% 감소된 93억5,622만9천원임.
-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.7% 감소한 810억 6,218만7천원이며,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.7% 감소한 530억5,19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-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내시 된 국·도비 보조사업과 태풍 “사오마이” 피해 복구사업, 추정 성립전 편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 계상분과 변경 결정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, 대부분이 정상경비 절감액과 연도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임.
- 특히, 정책판단과 사업추진 미흡으로 전체 예산의 5.65%인 67억5,501만8천원이 명시 이월된 사유와 특정 과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사유, 예측한 세입이 감소된 사유 등에 대하여는 결산감사시 정밀진단이 요구됨.
- 중점 심의할 사항으로는 세입이 감소한 사유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중 도비가 삭감된 사유, 당항포 관광지 산책로변에 원두막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## 11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한 사유는
- 답 : 예산편성시 직급별 기본호봉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함으로 발생하는 집행 잔액과 공무원 결원에 따른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.
- 문 : 면사무소 지하수 신고에 따른 예산을 개천면에만 편성한 사유는
- 답 : 개천면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, 나머지 읍·면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임. 지하수 관련 부서와 읍·면에서 향후 예산 요구시 예산에 반영시키겠음.
- 문 : 세입증대 포상금을 증액시킨 사유는
- 답 : 체납징수와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함.
- 문 : 평화통일 정책 읍·면 순회교육 참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
- 답 : 순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임.
- 문 : 공룡테마파크 조성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
- 답 :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을 합하여 공룡박물관 건립을 계획함.

- 문 :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는지
- 답 :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며, 체육협회에서 장학생을 지정하여 시달함.
- 문 : 화장장 사용료가 감소된 사유는
- 답 : 화장장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임.
- 문 :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중 도비가 삭감된 사유는
- 답 : 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이며,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.
- 문 : 의료 및 구료비가 삭감된 사유는
- 답 : 일본뇌염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는 3세부터 15세까지 의무 접종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나, 2000년부터는 6세와 12세에 한하여 예방 접종 하도록 지침이 변경시달 되어 접종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임.

12. 토 론 : 없음

### 13. 심사결과

#### 가. 세입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군수제출안	심 사 사 항		수 정 안	비 고
		삭 감 액	증 액		
계	81,062,187	0	0	81,062,187	
일반회계	76,039,909	0	0	76,039,909	
특별회계	5,022,278	0	0	5,022,278	

#### 나. 세출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군수제출안	심 사 사 항		수 정 안	비 고
		삭 감 액	증 액		
계	53,051,945	0	0	53,051,945	
일반회계	48,029,667	0	0	48,029,667	
특별회계	5,022,278	0	0	5,022,278	

#### 다.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

- 세입부분 : 변동없음
- 세출부분 : 변동없음